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3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 : 이소영ㆍ이용빈ㆍ앙이원영

신정훈 · 오영환 · 김용민

이형석 · 이용우 · 정필모

김경만 · 김주영 · 김수흥

윤준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아울러, 법 제12조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이나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대안학교 등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현행법이 타법상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한 법정 시설만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, 해당 법령상 등 록되거나 인가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.

그러나 이 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학교 등의 '시설'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'어린이'를 교통사고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,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설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할 것임.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대안학교로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그 일례임.

감사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.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, 전국 약 600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 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.

감사원은 동 감사결과에서 "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므로 교육관계법령상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,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시장 등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"라는 의견을 밝혀 통보한 바 있음.

이에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 2조제1항제5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	및 관리) ①
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	
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	
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	
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	
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	
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	
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	
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
	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
	는 시설 또는 장소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